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정금액 이상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동의 규정 신설〉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15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일정 금액 이상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동의 규정 신설 (안 제61조제4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

다. 회 부 일 : 2024.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물출자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물출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II. 검토의견

1. 일정 금액 이상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동의 규정 신설 (안 제6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물출자 시,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안 제61조제4항)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물 출자 시, 미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임.

현금출자의 경우 세출 예산으로 처리되므로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되나, 현물출자의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음¹⁾. 이에 따라 현물출자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만 하면 되고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 또한 국유재산의 ‘처분’에 현물출자가 포함²⁾되고

1)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있으나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출자 금액, 출자 대상 등 현물출자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국회의 사전적 심사와 견제에서 배제되고 있음.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을 현물출자 할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또한, 현물출자는 건당 출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출자 대상과 규모의 적정성을 국회에서 사전적으로 심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큰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물출자는 정부 보유 자산을 출자지분과 교환하는 것으로 국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국가재정법」상 현물출자는 예산외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 심의나 사전보고의 절차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이를 기초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정책금융 등을 제공³⁾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일단 현물출자를 시행할 경우 출자지분에

3)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수출입은

대한 매각이나 현금화를 통한 국가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금 출자와 유사한 재정부담 효과가 야기됨.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동의를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다만, 국회 동의의 대상을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현물출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최근 5년 간 정부 출자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1
현금출자	건수	60	69	70	71	70
	금액(억원)	93,911	85,222	83,135	60,536	64,866
현물출자	건수	-	3	3	4	3
	금액(억원)	-	8,707	11,075	28,228	80,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 이후 현물출자 내역(2024.11월말 기준)]

연도	출자대상기관	현물출자내역	
		출자재산	출자가액 (억원)
'15	한국산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한국전력공사 주식	2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도로공사 주식	1,500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차량(22편성)	3,469
	한국수출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0,000
'17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출자증권	5,000
'18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항만공사 출자증권	13,500

행은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도	출자대상기관	현물출자내역	
		출자재산	출자가액 (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10,970
'21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공사 주식, 한국공항공사 주식	6,500
	한국철도공사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철도운영자산	1,804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민자시설(건물 4개동)	403
'22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공항시설)	425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공사 주식	5,000
	한국산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5,650
'23	한국수출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0,000
	한국산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4,350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공항시설)	288
	주식회사에스알	도로공사 주식	3,590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도로공사 주식	40,000
	한국산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0,000
	한국수출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0,000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모든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할 경우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기업체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정부출자기업체는 정부 자본을 통해 설립되었으나, 일반 사기업을 지원하거나 일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이들 정부출자기업체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채권을 발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대부분의 정부출자기업체의 경우 사채 발행한도나 차입한도를 자본금과

연동⁴⁾시키고 있는 바, 긴급한 대응을 위해서 신속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임. 이때,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현물출자가 신속한 대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정부출자기업체 범위]

연번	기업명	연번	기업명
1	한국자산관리공사	18	한국석유공사
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
4	대한석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2	한국산업은행
6	한국방송공사	23	한국조폐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	24	한국철도공사
8	서울신문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
9	한국부동산원	26	항만공사
10	중소기업은행	27	한국주택금융공사
11	한국가스공사	28	한국해양진흥공사
12	한국공항공사	29	새만금개발공사
13	한국관광공사	3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4	한국광해광업공단	31	주식회사 에스알
15	한국교육방송공사	32	주택도시보증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도로공사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한 사전적 국회 동의를 도입할 경우, 의안의 제출과 국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부출자 기업체의 신속한 대응이 저해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⁵⁾.

4) 일례로, 「한국가스공사법」은 사채의 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5)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현물출자 명세서’를 제출하여 국회의 사후 통제를 받고 있고 국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신설할 경우 경제와 시장여건 변화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물출자로서 출자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150

참고 1

현물출자 해외 사례

- ☐ 현물출자 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폴란드 등의 경우 현물출자시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결정·집행

1. 일 본 : 국회 사전심의 없이 총무대신이 현물출자 승인

- ☐ 국유재산법 및 개별법에 따라 특수법인 설립 등 필요한 경우 현물출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회에서 개별 법률 제정시 현물출자가 승인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시 국회 사전심의 없이 총무대신의 승인으로 출자

2. 독 일 : 국회 사전심의 없이 현물출자 후 국회에 보고

- ☐ 정부조직을 공기업으로 전환 시 공기업화 여부에 대해서 국회 승인을 받으나,
 - 현물출자 시 사전 국회승인제도는 없으며, 현물출자 후 완료 보고서 국회에 제출
- ☐ 정부의 공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현물출자시에는 상법(주식회사법) 규정을 적용

3. 폴란드 : 국회 사전심의 없이 국무회의 등에서 현물출자 결정

- ☐ 공기업 출자는 주무부처 장관 및 국무회의 결정 사항으로서 국회의 사전심의제도는 없음
- ☐ 정부의 공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은 없으며, 현물출자 시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

4. 싱가포르 : 재무부가 재량으로 현물출자

- ☐ 재무부가 금융위기 등에 대응하여 테마섹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재량으로 출자

참고 2

현물출자 개요

- (정의) 정부출자기관의 신설 또는 자본확충 등을 위하여 증권·부동산·관리권 등을 출자하여 그 대가로 기관의 지분증권 취득
 - 현물출자 대가로 출자기관의 지분을 받으므로 국유재산 총액은 변함이 없으며,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음*
- *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예외(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

<예산총계주의 예외>

현물출자는 현금의 입·출입을 수반하지 않고 정부보유 지분증권의 종류만 변경
⇒ 세입·세출 예산·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음

* 예1) 정부가 산업은행에 한국토지공사 지분증권을 현물출자시: 예산 외
정부보유 현금지출 ×, 한국토지공사 지분증권↓, 산업은행 지분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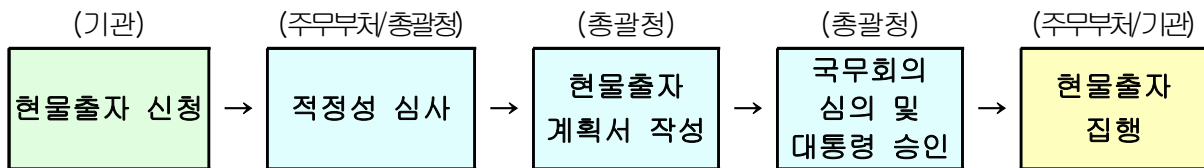
- (대상)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35개 기관*
- * 정부출자기관 40개중 5개(지역난방공사, 한국투자공사, 88관광개발, 송유관공사, 공항철도)를 제외한 기관

- (목적) 정부출자기관 설립시,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본확충 필요시, 운영체제 및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해 필요시 추진
- (절차) 기관의 출자신청 → 주무부처의 적정성 검토 및 출자요청 →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집행

참고 3

현물출자 진행절차

- 현물출자는 ① 현물출자 신청 ② 출자안 심사 ③ 현물출자 계획서 작성 ④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⑤ 출자 집행의 절차로 진행



- 각 단계별 세부설명

- ① **(현물출자 신청)** 현물출자를 희망하는 기관(예: 수은)이 주무부처(예: 기재부 대외국)에 현물출자 신청
- ② **(주무부처 심사)** 주무부처에서 현물출자 요구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후, 총괄청(기재부 국고국)에 현물출자 신청
- ③ **(총괄청 심사)** 총괄청에서 현물출자 요구에 대한 적정성 심사 후 현물출자 실시 여부 판단
- ④ **(출자대상 재산 평가)** 총괄청이 출자 희망기관에 현물출자 할 국유재산(예: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재산 가치(가액 등)평가 요청
- ⑤ **(현물출자 계획서 작성)** 출자 희망기관이 제출한 재산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총괄청이 **현물출자 계획서*** 작성

* 현물출자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출자재산의
가액과 내역, 출자시기 및 방법 등의 내용으로 작성

⑥ **(국무회의·대통령 승인)** 총괄청이 **현물출자 계획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 승인** 받음(국유재산법§61③)

⑦ **(현물출자 이행)** 결정된 현물출자 방안에 따라 출자 받을 기관이
출자재산 인수, 출자증권 발행 등 현물출자 이행